

제2870호
2021.10.13.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73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1-736호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6
제2021-74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
제2021-74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제2021-74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4
제2021-748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2

● 공 고

제2021-73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30
제2021-740호 : 상세주소 작편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3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1-733호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1.12.31.)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체육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조직개편 미정비 사항 및 관련규정 제명 정비
- 오·탈자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687, FAX : 3396-8636, E-mail : moon979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7조③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③항 위원장은 시민친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13조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②항 기금운용관은 등정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②항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②항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③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③--- ---- 시민친화국장-----.
제13조(회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②----- 동정부과장 -----.
제14조(기금의 결산)②항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14조(기금의 결산)②항2호 대차대조표 -----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3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
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령화 사회에 따라 어르신 복지 증진 관련 노인복지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에 규정한 기금 존속기한 변경
-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12월 3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사회복지과, 전화 : 02-3396-5364, 팩스 : 02-3396-8732, email : 2012050110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4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
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활기금은 법적규정에 의한 기금이며, 자활기금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에 규정한 기금 존속기한 변경
-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12월 3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사회복지과, 전화 : 02-3396-5395, 팩스 : 02-3396-8736, email : eszaq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44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돌봄SOS, 아동학대조사, 지하안전관리 등 신규 행정수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 (안 제2조)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 1,250명 → 1,272명(증 22)
- 집행기관의 정원 : 1,225명 → 1,247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 25명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별표3)

- 총계 : 1,250명 → 1,272명(증 22)
- 일반직 계 : 1,242명 → 1,264명(증 22)
- 6급이하 계 : 1,174명 → 1,196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agiwan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 중 “1,250명”을 “1,2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25명”을 “1,24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1,27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64	-			
3급	1	1			
4급	6	5		1	
5급	59	30	1	13	15
6급 이하 계	1,196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5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25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25명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table><tr><th>기 관별 직급별</th><th>총 계</th><th>본청</th><th>의 회 사무과</th><th>직속 기관</th><th>동</th></tr><tr><td>총 계</td><td>1,250</td><td colspan="4">-</td></tr><tr><td>정무직 계</td><td>1</td><td colspan="4">-</td></tr><tr><td>구청장</td><td>1</td><td>1</td><td></td><td></td><td></td></tr><tr><td>일반직 계</td><td>1,242</td><td colspan="4">-</td></tr><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r><tr><td>4급</td><td>6</td><td>5</td><td></td><td>1</td><td></td></tr><tr><td>5급</td><td>59</td><td>30</td><td>1</td><td>13</td><td>15</td></tr><tr><td>6급 이하 계</td><td>1,174</td><td colspan="4">-</td></tr><tr><td>전문경력관 계</td><td>2</td><td colspan="4"></td></tr><tr><td>별정직 계</td><td>7</td><td colspan="4">-</td></tr><tr><td>5급 상당</td><td>3</td><td>1</td><td>2</td><td></td><td></td></tr><tr><td>6급 상당이하계</td><td>4</td><td colspan="4">-</td></tr></table>	기 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 계	1,25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42	-				3급	1	1				4급	6	5		1		5급	59	30	1	13	15	6급 이하 계	1,174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이하계	4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7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47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25명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table><tr><th>기 관별 직급별</th><th>총 계</th><th>본청</th><th>의 회 사무과</th><th>직속 기관</th><th>동</th></tr><tr><td>총 계</td><td>1,272</td><td colspan="4">-</td></tr><tr><td>정무직 계</td><td>1</td><td colspan="4">-</td></tr><tr><td>구청장</td><td>1</td><td>1</td><td></td><td></td><td></td></tr><tr><td>일반직 계</td><td>1,264</td><td colspan="4">-</td></tr><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r><tr><td>4급</td><td>6</td><td>5</td><td></td><td>1</td><td></td></tr><tr><td>5급</td><td>59</td><td>30</td><td>1</td><td>13</td><td>15</td></tr><tr><td>6급 이하 계</td><td>1,196</td><td colspan="4">-</td></tr><tr><td>전문경력관 계</td><td>2</td><td colspan="4"></td></tr><tr><td>별정직 계</td><td>7</td><td colspan="4">-</td></tr><tr><td>5급 상당</td><td>3</td><td>1</td><td>2</td><td></td><td></td></tr><tr><td>6급 상당이하계</td><td>4</td><td colspan="4">-</td></tr></table>	기 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 계	1,27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64	-				3급	1	1				4급	6	5		1		5급	59	30	1	13	15	6급 이하 계	1,196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이하계	4	-			
기 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 계	1,25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42	-																																																																																																																																																											
3급	1	1																																																																																																																																																											
4급	6	5		1																																																																																																																																																									
5급	59	30	1	13	15																																																																																																																																																								
6급 이하 계	1,174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이하계	4	-																																																																																																																																																											
기 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 계	1,27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64	-																																																																																																																																																											
3급	1	1																																																																																																																																																											
4급	6	5		1																																																																																																																																																									
5급	59	30	1	13	15																																																																																																																																																								
6급 이하 계	1,196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이하계	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45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 증원 및 직급별 기능인력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원 증원에 따른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 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소수직렬 직급별 정원 조정
- 다. 기능감소 직렬 결원에 따른 기능인력 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agiwan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총 계	1,272	817	25	116	314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64	813	21	116	314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9	30	1	13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계	250	171	3	25	51
행정	154	98	3	9	44
세무	16	16			
사회복지	10	6			4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보건	1			1	
녹지	4	4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7			7	
환경	2	2			
시설(토목8,건축6,지적4,디자인1,도시계획2)	21	2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운전	5	5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88	264	9	42	73
행정		218	142	6	9	61
세무		21	21			
사회복지		23	10		1	12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전기6,화공3)		14	14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19			19	
시설(토목16,건축12,자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9	39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계		365	245	2	23	95
행정		192	121	2	6	63
세무		31	31			
사회복지		36	11			25
전산		6	6			
방호		2	2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7	2		8	7
환경		1	1			
시설(토목18,건축10,자적7,교통시설1)		36	3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2	2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0	0			
사무운영(워드1)		1	1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93	95	6	12	80
행정	54	22	2	2	28
세무	14	14			
사회복지	34	6			28
전산	1			1	
방호	6	5	1		
공업(기계5,전기9)	14	13	1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건축3,지적3)	12	12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1	1			
위생	4	4			
운전	29	9	2	3	15
전기운영(전기)	2	2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50	812	25	116	297	총 계		1,272	817	25	116	314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42	808	21	116	297	일반직 계		1,264	813	21	116	314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9	30	1	13	15	5급 소계		59	30	1	13	15
행정		36	21	1		14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복지		1	1				행정·복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의무		8			8	
6급 소계		243	165	3	24	51	6급 소계		250	171	3	25	51
행정		153	97	3	9	44	행정		154	98	3	9	44
세무		15	15				세무		16	16			
사회복지		9	5			4	사회복지		10	6			4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보건		1			1		보건		1			1	
복지		3	3				복지		4	4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6			6		간호		7			7	
환경		1	1				환경		2	2			
시설(토목8, 건축6, 지적3, 디자인1, 도시계획2)		20	20				시설(토목8, 건축6, 지적4, 디자인1, 도시계획2)		21	21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보건·진료		2			2	
운전		5	5				운전		5	5			

현행						개정안					
직렬별\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직렬별\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7급 소계	378	262	9	37	70	7급 소계	388	264	9	42	73
행정	218	142	6	9	61	행정	218	142	6	9	61
세무	21	21				세무	21	21			
사회복지	19	9		1	9	사회복지	23	10		1	12
전산	3	3				전산	3	3			
속기	3		3			속기	3		3		
방호	6	6				방호	6	6			
공업(기계5,전기6,화공3)	14	14				공업(기계5,전기6,화공3)	14	14			
녹지	3	3				녹지	3	3			
수의	1	1				수의	1	1			
보건	8	3		5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환경	1	1				환경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14			14		간호	19			19	
시설(토목15,건축12,자적6,디자인1,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시설(토목16,건축12,자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9	39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시설관리	4	4			
운전	10	10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계	358	246	2	29	81	8급 소계	365	245	2	23	95
행정	191	120	2	6	63	행정	192	121	2	6	63
세무	32	32				세무	31	31			
사회복지	29	11			18	사회복지	36	11			25
전산	6	6				전산	6	6			
방호	2	2				방호	2	2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녹지	6	6				녹지	5	5			
보건	4			4		보건	4			4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4			14		간호	17	2		8	7
환경	2	2				환경	1	1			
시설(토목18,건축10,자적7, 교통시설2)	37	37				시설(토목18,건축10,자적7, 교통시설1)	36	36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2	2			
운전	10	10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기계운영(기계)	0	0			
사무운영(워드1)	1	1				사무운영(워드1)	1	1			

현 행							개 정 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95	97	6	12	80	9급 소계		193	95	6	12	80
행정		54	22	2	2	28	행정		54	22	2	2	28
세무		14	14				세무		14	14			
사회복지		34	6			28	사회복지		34	6			28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6	5	1			방호		6	5	1		
공업(기계5,전기9)		14	13	1			공업(기계5,전기9)		14	13	1		
녹지		3	3				녹지		3	3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건축3,지적4)		13	13				시설(토목6,건축3,지적3)		12	12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30	10	2	3	15	운전		29	9	2	3	15
전기운영(전기)		2	2				전기운영(전기)		2	2			
기계운영(기계)		3	2			1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9			1	8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4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구직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
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및 사업의 효과적 실행을 뒷받침하고자 상위법
및 최신 평생학습 기조에 맞게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중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학습센터 등 관련 용어 정의 수정·보완(안 제2조, 제18조)
- 평생교육 진흥 책무 강화(안 제3조)
-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 제4조의 2)
- 평생교육협의회 탄력적 구성 및 연계기능 강화(안 제7조)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 2)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 이동(안 제9조)
- 상향식 기반의 실무협의회 조직체계 및 기능 강화(안 제10조)
-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안 제16조)
- 평생교육 수료자 등에 대한 포상 등 예우 범위 확대(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평생교육추진단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평생교육추진단, 전화 : 02-3396-4673, 팩스 : 02-3396-8662, email : ahjungj@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 정보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평생학습 상담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에게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들의 활동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고,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마일리지 부여기준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평생직업교육, 시민교육, 문자해독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중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는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산하에 권역 실무협의회와 동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2조(설치)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관할 구역내 또는 인터넷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5.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7. 권역별 · 동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8.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운영직원의 배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거나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결정과 감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생학습센터

제18조(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3에 따라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등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평생학습센터 업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및 권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절차 등) ①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제18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에 배치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수료자 등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조한 사람에게는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38호

서울특별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 세무1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개별주택특성조사 업무지원
- 채용인원 : 2명
- 채용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 2021년 12월 17일(금)
- 업무내용 : 개별주택 현장 사진 촬영 및 사진자료 정리

2.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공무원 신분이아님)]
- 보수 : 일급 69,760원(중식 및 교통비 10,000원)
-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및 제수당 지급
- 근무장소 : 세무1과 및 중구 관내
-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 주 35시간(1일 8시간), 휴일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실시

3. 신청자격

- 자격 : 공고일 현재 만25세 이상 만55세 이하 신체 건강한 자
- 주소 : 공고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학력 : 제한 없음
- 자격요건 :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및 디지털카메라 사용가능한 자
중구 관내 현장 출장에 지장이 없는 자

4. 채용방법

- 제1차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수가 채용예정인원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심사 후 채용예정인원의 120%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평가항목** : 자격요건, 소득수준, 중구거주기간, 부양가족원 수 등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 수행능력,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가성적(70%) 및 면접시험 평정성적(30%)을 합산하여 전체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6. 모집공고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2021. 10. 21.(목) ~ 10. 22.(금) 09:00~12:00 / 13:00~18:00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중구청 세무1과 과표팀 (구청 본관 2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단체 및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0. 25.(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휴대폰 등)으로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사실증빙자료 제출 : 2021. 10. 26.(화)까지
※제출기한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확인결과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무효처리
- 제2차시험(면접시험): 증빙자료 확인 후 면접시험일정 시간 및 장소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0. 28(목) 유선(휴대폰 등)으로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붙임 2】**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지참) - 본인확인용
- 응시원서(별지 소정양식, (컬러)사진 2매 첨부) 1부.
- 이력서(별지 소정양식, (컬러)사진 1매 첨부)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소정양식, A4 2매 이내)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소정양식) 1부.

• **서류전형합격자 증빙용 제출자료 (※별도안내에 따라 제출)**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20년 기준] 1부.
(※소득이 없어 발급불가할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로 대체)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포함)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안내

작성항목	증빙서류	발급방법
중구전입일 부양가족원 수	-주민등록 등본(주소변경내역 포함)	[방문]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연간 소득액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18년기준】 ※소득이 없어 발급불가할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18년기준】'로 대체	[방문]세무서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저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 중 한가지) 1)한부모가족 증명서 2)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자활근로자 확인서 5)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방문]구청 복지급여담당부서, 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취업지원· 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방문]지방보훈청,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으로는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학력 및 경력사항은 증명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합격 및 채용 후라도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무부서 채용기준 부적합 및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취소, 합격자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합니다.
- 본 사업 참여에 따라 소득 발생 등의 사유로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응시희망자는 관련 내용을 사전확인 후 응시하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02-3396-5152)**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서 통보 및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13. ~ 2021. 10. 27. (14일간)
3.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2021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공시송달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내역	고지대상자	고지대상자 주소
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7	101,102,103,105,201, 202,203,205,301,302, 303,305,401	허*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
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7	101,102,103,105,201, 202,203,205,301,302, 303,305,401	한*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
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7	101,102,103,105,201, 202,203,205,301,302, 303,305,401	하*우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
4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7	101,102,103,105,201, 202,203,205,301,302, 303,305,401	이*비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
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7	101,102,103,105,201, 202,203,205,301,302, 303,305,401	이*옥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
6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7	101,102,103,105,201, 202,203,205,301,302, 303,305,401	오*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
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7	101,102,103,105,201, 202,203,205,301,302, 303,305,401	오*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
8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7	101,102,103,105,201, 202,203,205,301,302, 303,305,401	안*성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
9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7	101,102,103,105,201, 202,203,205,301,302, 303,305,401	송*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
1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7	101,102,103,105,201, 202,203,205,301,302, 303,305,401	김*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
1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7	101,102,103,105,201, 202,203,205,301,302, 303,305,401	김*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
1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7	101,102,103,105,201,202,203,205, 301,302,303,305,401	이*용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가길 ***
13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0길 21	B101,B102,101,102, 201	장*섭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0길 ***
14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0길 21	B101,B102,101,102, 201	송*식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0길 ***
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0길 21	B101,B102,101,102, 201	정*순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0길 ***
16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0길 21	B101,B102,101,102, 201	장*순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0길 ***
1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39	B101,B102,B103,101,102,201,202,3 01,302, 401	한*용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

연번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내역	고지대상자	고지대상자 주소
1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39	B101,B102,B103,101,102,201,202,301,302,401	이*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
1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39	B101,B102,B103,101,102,201,202,301,302,401	양*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
2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39	B101,B102,B103,101,102,201,202,301,302,401	소*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
2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39	B101,B102,B103,101,102,201,202,301,302,401	박*균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
2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39	B101,B102,B103,101,102,201,202,301,302,401	김*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
2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39	B101,B102,B103,101,102,201,202,301,302,401	김*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
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39	B101,B102,B103,101,102,201,202,301,302,401	하*훈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
25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 16-4	101,102,103,201,202,203	전*수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 ***
26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 16-4	101,102,103,201,202,203	곽*훈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 ***
27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 16-4	101,102,103,201,202,203	박*범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 ***
28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3다길 13	B101,B102,101,201,301,401	김*희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3다길 ***
29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3다길 13	B101,B102,101,201,301,401	김*례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3다길 ***